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강성호* 최옥금**

Keywords

소득이전 제도(income transfer program),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빈곤 감소 효과(poverty reduction effect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system in Korea,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Using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and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this study estimates poverty ratio and Gini-coefficients as the main indicators of the effectiveness.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overty ratio of farm household and forestry household is higher than general household's poverty ratio. Secondly,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are the highest in farm household, forestry household, and general household. And commonly, as age is getting hig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are higher.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 are higher than public transfer programs in only general househ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will be higher if we include farm and forestry household. An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eded to supplement elder's income support system for farm and forestry household.

차례

- | | |
|-------------------|------------|
| 1. 서론 | 3. 분석 결과 |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4. 요약 및 결론 |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ksh0515@nps.or.kr

** 교신저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ogchoi@nps.or.kr

1. 서론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이전 제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빈곤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득이전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된 바 있다. 국외 연구들은 주로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LIS)가 발전시킨 국제 소득비교 연구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소득이전 제도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Mitchell 1991; Atkinson et al., 1995; 김진욱 2004에서 재인용).

그리고 소득이전 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성 및 효율성 등 탈빈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손병돈 1999;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등), 이후 연구범위를 넓혀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진욱 2004; 여유진 2009 등)들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일반 가구(예: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가구 특성별(예: 농림어가 등)로 소득이전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 대부분 농림업 가구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구 특성별 분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전 제도의 빈곤 감소 및 불평등 감소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농가와 임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집단에 대한 소득이전 효과가 일반 가구와 비교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산림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임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가구와 농업 가구, 임업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고, 이들의 소득이전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농업 가구와 임업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소득 이전제도의 소득 분배 및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동향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또한 분석 자료에 대한 소개 및 소득의 정의와 분류, 빈곤 감소 효과 및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대한 내용과 같은 연구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가구유형별 소득 구성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빈곤 수준,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및 불평등 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검토¹

국내에서 소득이전 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손병돈 1999;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및 효율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소득이전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김진욱 2004; 홍경준 2005; 여유진 2009; 강성호·최옥금 2010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소득(공적이전 및 사적이전)뿐 아니라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로 구성되는 소득이전 지출을 분석(김진욱 2004)하거나, 공적연금체제 유형에 따라 빈곤 감소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분석(홍경준 2005)한 연구, 또는 최근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경우(강성호·최옥금 2010), 그리고 영역별, 인구학적 특성별, 지역별 재분배 효과(여유진 2009)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이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나라 소득이전 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는 도입기간이 짧거나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사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보다 적을 수 있고, 둘째, OECD 국가들의 비교 연구 결과 서구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소득이전 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소득 이전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성숙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¹ 농가나 임가의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박대식, 2004)’, ‘영세, 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박대식 외, 2009)’ 등의 선행연구에서 농가의 경제상태 및 소득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패널데이터나 도시가계연보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모집단화에는 근본적인 한계²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김진욱 2004), 둘째,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는 대부분 농림업 가구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구뿐 아니라 농림업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며 이들 가구의 소득이전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른 가구와 비교했을 때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유진(2009)에서 지적하듯이, 농림업 가구의 빈곤율과 각종 정부이전 지출의 수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농가와 임가의 경우 소득이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가구뿐 아니라 농림업 가구의 경제적 상황 및 이들 가구의 소득이전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른 가구와 비교했을 때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농가와 임가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 집단과 기존의 도시 가구(혹은 일반 가구)의 소득이전 제도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산림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임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가구와 농업 가구, 임업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고, 이들 가구의 소득이전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농업 가구와 임업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2.2.1. 분석자료

본 고에서는 일반 가구, 농가와 임가의 빈곤 감소 효과 및 소득불평등을 분석할 것인데,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가경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조사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

² 패널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조사 자료의 경우는 전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2차부터는 탈락한 관측치를 보강하지 않으면 그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인 노동패널의 경우에도 1차 조사자료 당시에 놓여준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도시가계조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다소 결여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1인 가구 포함)으로, 농(림)가, 어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약 9,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모든 비목에 대해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조사³하므로 소득 및 지출이 가장 정확하게 조사되는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계조사에서는 농림업 가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가와 임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농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이 자료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약 3,200개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단독(1인)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농업시험장/학교/종교단체 및 법인 등 (준)농가를 제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가경제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임가경제조사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인 1,114개의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임가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가구의 실태는 가계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우 농가경제조사, 임가의 경우 임가경제조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모든 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2.2.2. 소득의 정의와 분류

소득분류 체계 및 방식에 따라 빈곤 및 불평등도에 대한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빈곤 및 불평등도 추정을 자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하고자 하는데, 자산의 경우 유동화 과정에서의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하였다⁴.

이때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OECD의 소

³ 가계조사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는 자영자 소득이, 2006년 이전까지 1인가구가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측면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으나, 여전히 농림업가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⁴ 물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적용 소득은 소득인정액 개념이므로 자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야 정확한 산출이 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산출보다는 세 집단 간의 경제 상태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더라도 집단 간 비교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다.

득 분류 방식을 기초로 한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OECD의 소득 분류 방식을 기초로 하되, 각 소득별 분배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소득을 <표 1>과 같이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분배 효과는 크게 공적이전 효과, 사적이전 효과로 구분되고 공적이전 효과는 다시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정부보조금의 개별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공적이전 효과와 사적이전 효과는 시장소득에 각각의 소득원을 추가하여 소득분배 변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분배효과 측정을 위한 소득 분류

구분		정의	
시장소득(A)		근로소득(a1)+자영소득(a2)+재산소득(a3)+개인연금(a4)	
공적이전 효과	개별 효과	+공적연금(b1)	시장소득(A)+공적연금(b1)
		+기초노령(b3)	시장소득(A)+기초노령연금(b2)
		+기타(b3)	시장소득(A)+기타사회보장급여(b3)
	총효과: 공적이전소득(B)	시장소득(A)+공적연금(b1)+기초노령(b2)+기타사회보장급여(b3)	
사적이전 효과: 사적이전소득(C)		시장소득(A)+사적이전(C)	

- 주: 1) 임가의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사회보험료(공적연금보험료 포함)를 포함
 2)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자료의 한계상 가계조사에서만 고려되었음
 3) 일반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은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를 포함함.
 4) 농림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은 농업투자 보조금, 기타농업보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⁵
 5) 임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은 임업투자보조금, 기타보조금, 연금 및 기타사회보장수혜가 포함되어 있음.

5 농가의 공적이전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직불금은 영농규모가 큰 농가나 임가에 이전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농가의 공적이전에는 농업투자 보조금, 기타농업보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직접직불금의 경우 기타농업보조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농업보조금 항목에는 직접직불금뿐 아니라 농약, 비료 등의 보조, 친환경보조 등 농업관련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둘째, 본 연구는 일반가구와 농가, 임가의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비록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 결과를 일반 가구와 비교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이를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2.2.3.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효과 측정 방법

소득원천에 따른 빈곤과 소득불평등 변화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Ringen(1987)의 표준적 접근 방법을 지적할 수 있다. 표준적 접근 방법이란 소득 요소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분배 지표의 변화를 통하여 재분배효과를 추정하는 방법⁶으로, 이를 통해 해당 소득원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Beckerman 1979). 소득원의 효과성이란 특정 사회복지제도 또는 총량적 공적이전의 결과가 분배 상태를 얼마나 개선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가구 공적 현금이전과 조세 각각과 관련된 소득분배 지표의 일정 비율(%포인트) 감소로 정의된다. 한편, 효과성을 계측하기 위하여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과 총량적 공적 현금이전의 빈곤 감소 및 불평등 경감 효과를 살펴본 있는데, 빈곤 감소 효과는 빈곤율(HR: Headcount Ratio)을 통해, 불평등 경감 효과는 지니계수를 통해 계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산출에 있어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선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 연도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2009년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므로 본 고에서는 '09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상대적 빈곤선은 OECD 분류 체계 기준⁷인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의 50%를

표 2.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2007년~2009)

(단위: 원/월)

구 분	'07년 최저생계비	'08년 최저생계비	'09년 최저생계비	'10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35,921	463,047	490,845	504,344
2인 가구	734,412	784,319	835,763	858,747
3인 가구	972,866	1,026,603	1,081,186	1,110,919
4인 가구	1,205,535	1,265,848	1,326,609	1,363,091
5인 가구	1,405,412	1,487,878	1,572,031	1,615,263
6인 가구	1,609,630	1,712,186	1,817,454	1,867,435

자료: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⁶ Ringen(1987)의 “표준적 접근”은 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데 유연한 모델을 제공하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유진 외(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⁷ 한편, 상대빈곤율과 관련하여, Behredt(2002)는 빈곤을 극빈곤(extreme poverty: 중위소득의 30% 미만), 중빈곤(severe poverty: 중위소득의 40% 미만), 경빈곤(moderate poverty: 중위소득의 50%), 약빈곤(near poverty: 중위소득의 60%)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빈곤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소득원천별 불평등도에 대한 측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결과

3.1. 가구유형별 소득 및 소득 구성 현황

2006~2009년의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소득과 농가·임가의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2009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농가, 임가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소득은 등락이 일정하지 않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농가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시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농가와 임가는 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가구유형별 소득 비교(2006~2009년)

(단위: 천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3년평균 증가율
농가소득*	32,303	31,967 (-1.0)	30,523 (-4.5)	30,814 (1.0)	(-1.5)
임가소득**	27,846	28,501 (2.4)	27,288 (-4.3)	27,391 (0.4)	(-0.5)
도시근로자***	41,133	43,819 (6.5)	46,867 (7.0)	46,664 (-0.4)	(4.4)

자료: * 통계청>농림어업>농업>농가 경제 조사>농가(2003~)

** 산림청>그린정보>임가경제조사. 표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 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명목(당해년가격)>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2인 이상)

한편 일반 가구⁸의 소득 원천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 비중의 평균이 55.36%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소득이 20.87%, 사적이전소득이 10.80%, 공적이전소득이 9.14%, 비경상소득이 3.27%, 재산소득이 0.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주 연령을

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되다가 2009년 현재 농림어가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는 ‘일반 가구’로 표현하기로 한다.

기준으로 60대 미만과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으며(9.71%p 증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5.96%p, 3.57%p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30.85%p 감소)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18.95%p, 11.34%p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가의 소득원천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농업소득(사업소득)이 35.52%로 가장 높았으며, 농업외소득(근로+재산소득 등)은 30.38%, 공적이전소득이 17.71%, 사적이전소득이 5.88%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구주 연령을 60대 미만과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의 비중이 14.9%p 높았으며,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각각 8.54%p, 4.13%p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의 비중이 5.69%p 낮고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각각 3.26%p, 1.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구유형별 소득구성비 평균(2009년)

(단위: %)

소득원천	일반 가구			농가			임가		
	전체	60대 미만	60대 이상	전체	60대 미만	60대 이상	전체	60대 미만	60대 이상
가구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96.73	97.56	94.09	89.52	92.11	88.54	87.2	87.3	87.0
근로소득	55.36	65.07	24.51	30.38**	45.28**	24.69**	43.4*	47.9*	37.3*
사업(농·임)소득 ²⁾	20.87	21.74	18.09	35.52	35.89	35.38	27.9	30.4	24.6
재산소득	0.54	0.31	1.24						
공적이전소득	9.14	3.18	28.09	17.71	9.17	20.97	11.6	7.4	17.2
사적이전소득	10.80	7.23	22.14	5.88	1.75	7.46	4.3	1.6	7.8
비경상소득	3.27	2.44	5.91	10.48	7.89	11.46	12.8	12.7	13.0

주 1.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율의 평균임.

2. 일반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 농가와 임가는 농가소득과 임가소득을 의미

3. *는 임외소득임(임가가 임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의미)

4. **는 농업외소득임(농가가 농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 겸업소득⁹과 사업외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2009;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9; 산림청, 임가패널 2009

⁹ 겸업소득의 경우 농업 외 활동, 혹은 임업 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겸업수입과 겸업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켰으나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임업가구의 경우 임업외소득(근로+재산소득 등)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임업소득(사업소득)은 27.9%, 비경상소득 12.8%, 공적이전소득 11.6%, 사적이전소득 4.3% 순으로 나타나, 주업종인 임업소득보다 오히려 임업외소득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구주 연령에 따라 60대 미만과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의 경우 전체 임가와 비교할 때 임업외소득의 비중이 4.5%p 높으며,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각각 4.2%p, 2.7%p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6.1%p 적었으며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각각 5.65%p, 3.5%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 가구에 비해 임가는 경상소득 비중이 낮고, 특히 근로소득(임업외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농가와 비교하면 임가의 경상소득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임가는 임업소득보다 근로소득(임업외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3.2. 가구 유형별 빈곤 및 불평등 수준

여기에서는 가구 유형별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가구 유형별 빈곤 수준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09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가구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은 15.3%로 추정되었으며, 상대빈곤율은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22.0%, 상대빈곤율은 19.6%로 일반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가의 경우는 30.0%로 추정되어 임가의 빈곤율이 일반 가구평균에 비해 약 14.7%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이를 가구주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가구주 연령이 60대 미만인 일반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8.9%였으며, 농가는 15.4%, 임가는 31.3%로 나타나 임가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농가와 일반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가구주 연령대로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일반 가구의 빈곤율은 35.6%, 농가는 12.8%, 임가는 28.8%로 나타나 노인 빈곤율은 오히려 일반 가구, 임가, 농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가구가 대부분 근로자 가구일 것으로 가정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들 가구주의 퇴직으로 이들의 빈곤율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임가와 농가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또한 상대빈곤율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60대 미만 일반 가구는 12.2%, 농가는

24.7%, 임가는 28.8%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 일반 가구는 48.5%, 농가는 22.3%, 임가는 22.3%로 나타났다.¹¹

표 5. 가구주 연령별 절대 및 상대빈곤율(2009년)

(단위: %, 만원)

구분		일반 가구		농가		임가		가구수
		절대빈곤	상대빈곤	절대빈곤	상대빈곤	절대빈곤	상대빈곤	
전체		15.3	20.9	22.0	19.6	30.0	23.3	(95,283)
가구 구분 1	60대 미만	8.9	12.2	15.4	12.8	31.3	24.4	(45,351)
	60대 이상	35.6	48.5	24.7	22.3	28.8	22.3	(49,932)
가구 구분 2	30대 이하	8.2	10.7	25.8	17.7	13.6	14.1	(1,934)
	40대	8.3	11.1	19.1	14.3	28.6	23.2	(15,227)
	50대	10.8	15.5	13.8	12.1	34.0	25.8	(28,190)
	60대	25.8	37.0	13.8	12.5	25.9	21.2	(28,957)
	70대 이상	49.3	64.4	35.0	31.6	32.8	23.8	(20,976)

주 1. 절대빈곤의 경우 2009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함(월 경상소득 기준).

2. 상대빈곤의 경우 가구균등화 지수(소득/ $\sqrt{\text{가구원}}$) 적용.

3. ()안은 모집단 가중치로 산출된 임가의 추정가구 수 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2009;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9; 산림청, 임가패널 2009

이를 살펴보면, 일반 가구 기준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비노인가구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경우에도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비노인가구보다 9.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가의 경우만 보면 오히려 60대 미만 가구의 빈곤율이 60세 이상 가구에 비해 2.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연령을 10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절대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일반 가구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가의 경우 30대 이하와 40대 가구의 빈곤율이 50-60대 가구에 비해 높았으나 임가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超) 고령기(70세 이상)로 갈수록 두 집단과 일반 가구 모두 빈곤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 가구 기준으로 연령대별 절대빈곤율을 살

¹⁰ 임가, 농가의 경우 자영자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직장인과 같은 뚜렷한 퇴직 형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¹¹ 상대빈곤율은 각 자료별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를 절대 빈곤 기준으로 분석한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해보면, 30대 이하 가구 8.2%, 40대 가구 8.3%, 50대 가구 10.8%, 60대 가구 25.8%, 70대 이상 가구 49.3%로 나타나 은퇴시점인 60대 이상에서 빈곤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농가의 경우 30대 이하 가구 25.8%, 40대 가구 19.1%, 50대 가구 13.8%, 60대 가구 13.8%, 70대 이상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35.0%로 나타났으며, 임가의 경우, 30대 이하 가구 13.6%, 40대 가구 28.6%, 50대 가구 34.0%, 60대 가구 25.9%, 70대 이상 가구 32.8%로 나타나, 농가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연령을 10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상대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일반 가구 기준으로 연령대별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30대 이하 가구 10.7%, 40대 가구 11.1%, 50대 가구 15.5%, 60대 가구 37.0%, 70대 이상 가구 64.4%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경우 30대 이하 17.7%, 40대 14.3%, 50대 12.1%, 60대 12.5%, 70대 이상 31.6%였으며, 임가의 경우 30대 이하 14.1%, 40대 23.2%, 50대 25.8%, 60대 21.2%, 70대 이상은 23.8%로 나타났다.

3.3. 가구 유형 및 소득원별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

여기에서는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의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원별 절대빈곤율 산출을 통해 가구 유형별로 빈곤 감소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3.3.1. 가구 유형별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

첫째,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25.8%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공적연금을 추가한 소득으로 산출하면 23.9%로 나타나 공적연금 급여가 약 1.9%p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을 추가한 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25.5%로 나타나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기초노령연금은 약 0.3%p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기타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25.5%로 나타나 기타 공적이전소득이 약 0.3%p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및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추가

한 소득(공적이전소득의 총효과)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22.3%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이 약 3.5%p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 총효과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에서는 빈곤 감소 효과가 1.1%p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10.3%p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 이후 시점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공적연금의 비중 증가로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7.0%p)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연령대 별로 구분한 ‘가구구분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대가 가장 높은 70대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12.1%p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은퇴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으로 산출하면 빈곤율은 19.7%로 나타나 사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을 약 6.1%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의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빈곤 감소 효과가 2.6%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으로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빈곤율은 10.5%로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을 약 4.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49.1%로 11.6%p의 빈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높아지는 이러한 경향은 ‘가구구분2’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표 6. 일반 가구의 소득원천별 절대빈곤 감소 효과(2009년)

(단위: %)

구분		시장소득 (A)	공적이전 효과			총효과	사적 이전 효과
			개별효과				
			+공적연금	+기초노령 연금	+기타		
전체		25.8	23.9(-1.9)	25.5(-0.3)	25.5(-0.3)	22.3(-3.5)	19.7(-6.1)
가구 구분 1	60대 미만	14.9	14.6(-0.3)	14.7(-0.2)	14.7(-0.2)	13.5(-1.1)	10.5(-4.1)
	60대 이상	60.7	53.7(-7.0)	59.9(-0.8)	59.9(-0.8)	50.4(-10.3)	49.1(-11.6)
가구 구분 2	30대 이하	13.9	13.9(0)	13.8(-0.1)	13.8(-0.1)	13.2(-0.7)	9.0(-4.9)
	40대	14.3	14.3(0)	14.2(-0.1)	14.2(-0.1)	12.9(-1.4)	9.9(-4.4)
	50대	16.8	15.9(-0.9)	16.7(-0.1)	16.7(-0.1)	14.8(-2.0)	13.2(-3.6)
	60대	46.2	39.9(-6.3)	45.6(-0.6)	45.6(-0.6)	37.2(-9.0)	36.9(-9.3)
	70대 이상	80.8	72.8(-8.0)	79.8(-1.0)	79.8(-1.0)	68.7(-12.1)	66.1(-14.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 원시자료 분석

가구주 연령대가 가장 높은 70대 이상에서 빈곤 감소 효과가 14.7%p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일반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농가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농가의 빈곤율은 38.6%로 산출되었다. 여기에 공적연금을 추가하여 산출하면 29.0%로 나타나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는 약 9.6%p였으며, 시장소득에 기타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하여 산출한 빈곤율은 36.0%로 나타나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약 2.6%p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소득에 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및 기타 공적이전소득 모두 추가)을 추가하여 산출한 빈곤율은 26.3%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의 총빈곤 감소 효과는 12.3%p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 총공적이전 효과가 2.8%p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총공적이전 효과는 15.5%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구분한 ‘가구구분2’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는데 가구주 연령대가 가장 높은 70대 이상에서 빈곤 감소 효과가 18.1%p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은퇴 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소득은 농가의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농가의 소득 원천별 절대빈곤 효과(2009년)

(단위: %)

소득 기준		시장소득 (A)	공적이전 효과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효과	
			+공적연금	+기타		
전체		38.6	29.0(-9.6)	36.0(-2.6)	26.3(-12.3)	33.4(-5.2)
가구 구분 1	60대 미만	18.4	16.7(-1.7)	17.6(-0.8)	15.6(-2.8)	17.9(-0.5)
	60대 이상	46.9	34.0(-12.9)	43.5(-3.4)	31.4(-15.5)	39.6(-7.3)
가구 구분 2	30대 이하	27.4	26.7(-0.7)	26.7(-0.7)	25.8(-1.6)	27.4(0)
	40대	23.0	22.5(-0.5)	21.1(-1.9)	19.1(-3.9)	23.0(0)
	50대	16.5	14.4(-2.1)	16.0(-0.5)	14.1(-2.4)	15.8(-0.7)
	60대	31.1	20.0(-11.1)	27.4(-3.7)	18.5(-12.6)	27.1(-4.0)
	70대 이상	61.7	47.2(-14.5)	58.7(-3.0)	43.6(-18.1)	51.5(-10.2)

주: ()안은 소득원천별 순 효과를 의미.

자료: 농가조사(2009) 원시자료 분석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으로 산출하면 빈곤율은 33.4%로 나타나 사적이전소득은 빈곤율을 약 5.2%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의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빈곤율 완화 효과는 7.1%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하여 산출한 빈곤율은 17.9%로 빈곤율을 약 0.5%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39.6%로 7.3%p의 빈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적이전 효과가 높아지는 이러한 경향은 ‘가구구분2’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가구주 연령대가 가장 높은 70대 이상에서 빈곤 감소 효과가 1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농가의 경우는 일반 가구와 달리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빈곤 감소 효과가 높아 일반가구에 비해 농가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임업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임가의 빈곤율은 46.6%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공적연금을 추가한 소득으로 산출하면 40.2%로 나타나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는 약 6.4%p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에 기타 공적이전 소득(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 소득)을 추가하여 산출한 빈곤율은 42.1%로 나타나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4.5%p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소득에 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및 기타 공적이전소득 모두 추가)을 추가하여 산출한 빈곤율은 35.6%로 나타나 공적이전 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11.0%p로 나타났다.

표 8. 임가 이전소득의 절대빈곤 완화 효과(2009년)

(단위: %)

소득 기준		시장소득 (A)	공적이전 효과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효과	
			+공적연금	+기타		
전체		46.6	40.2(-6.4)	42.1(-4.5)	35.6(-11.0)	40.5(-6.1)
가구 구분 1	60대 미만	35.4	34.3(-1.1)	33.7(-1.7)	32.6(-2.8)	34.0(-1.4)
	60대 이상	56.7	45.7(-11.0)	49.7(-7.0)	38.4(-18.3)	46.3(-10.4)
가구 구분 2	30대 이하	25.1	25.1(0.0)	20.5(-4.6)	20.5(-4.6)	25.1(0.0)
	40대	32.0	32.0(0.0)	29.8(-2.2)	29.8(-2.2)	30.8(-1.2)
	50대	37.9	36.1(-1.8)	36.8(-1.1)	35.0(-2.9)	36.3(-1.6)
	60대	48.7	35.3(-13.4)	42.2(-6.5)	31.6(-17.1)	42.1(-6.6)
	70대 이상	67.7	59.9(-7.8)	60.0(-7.7)	47.8(-19.9)	52.2(-15.5)

주: ()안은 소득원천별 순효과를 의미.

자료: 산림청, 임가패널 2009 원시자료 분석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 가구의 총공적이전 효과는 2.8%p인 반면, 60대 이상 가구의 총공적이전 효과는 18.3%p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을 10세단위로 구분한 ‘가구구분2’에서 살펴보면, 40대 이후 고령이 될수록 공적이전소득은 임가의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으로 임가의 절대빈곤율을 산출하면 29.1%로 나타나 사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을 약 2.1%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의 공적이전 소득에 비해 빈곤율 완화효과는 2.4%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장소득에 사적이전 소득을 추가하여 산출한 빈곤율은 34.0%로 빈곤율을 약 1.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46.3%로 10.4%p의 빈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적이전 효과가 높아지는 이러한 경향은 ‘가구구분2’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가구주 연령대가 가장 높은 70대 이상에서 빈곤 감소 효과가 15.5%p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임가의 경우도 농가와 마찬가지로 일반가구와 달리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빈곤 감소 효과가 높아 임가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3.3.2. 가구 유형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감소 효과

다음으로 소득원천별 불평등 감소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일반 가구의 불평등 감소 효과를 공적이전소득 발생 전후로 구분하여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공적 이전 전의 지니계수는 0.4091이었으나 공적이전 후에는 0.3752로 공적 이전 후 소득불평등이 약 8.3%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를 가구주 연령을 60세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 가구는 3.2% (0.34809 → 0.33698), 60대 이상 가구는 20.2%(0.54659 → 0.43637)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미만 가구에 비해 60대 이상 가구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17.0%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불평등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30대 이하 가구는 1.7%(0.34276 → 0.33690), 40대 3.1%(0.34152 → 0.33097), 50대 4.9%(0.36463 → 0.34662), 60대 18.9%(0.47942 → 0.38882), 70세 이상은 23.3%(0.60735 →

0.46585)가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농가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공적이전 전후로 구분하여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공적이전 전의 지니계수는 0.44141이었으나 공적이전 후에는 0.37945로 공적이전 후 소득불평등이 약 14.0% 감소하였다. 이를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주 연령을 60세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 가구는 5.7%(0.44798 → 0.42226), 60세 이상 가구는 17.3%(0.40966 → 0.33848)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미만 가구에 비해 60대 이상 가구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11.6%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불평등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30대 이하 가구는 7.1%(0.52278 → 0.48544), 40대 6.8%(0.52012 → 0.48466), 50대 4.9%(0.40780 → 0.38787), 60대 16.2%(0.38843 → 0.32548), 70세 이상의 경우 20.0%가 개선되었다(0.40676 → 0.32518).

표 9. 가구 유형별 공적이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지니계수(2009년)

(단위: %)

구분	일반 가구			농가			임가			
	공적 이전 전 (경상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 이전 후 (경상소득)	공적 이전 효과	공적 이전 전 (경상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 이전 후 (경상소득)	공적 이전 효과	공적 이전 전 (경상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 이전 후 (경상소득)	공적 이전 효과	
전체	0.40915	0.37521	-0.0339 (-8.3)	0.44141	0.37945	-0.0619 (-14.0)	0.65262	0.61812	-0.0345 (-5.3)	
가구 구분 1	60대 미만	0.34809	0.33698	-0.0111 (-3.2)	0.44798	0.42226	-0.0257 (-5.7)	0.66123	0.63607	-0.0252 (-3.8)
	60대 이상	0.54659	0.43637	-0.1102 (-20.2)	0.40966	0.33848	-0.0711 (-17.3)	0.62900	0.57303	-0.0560 (-8.9)
가구 구분 2	30대 이하	0.34276	0.33690	-0.0059 (-1.7)	0.52278	0.48544	-0.0373 (-7.1)	0.61694	0.59281	-0.0241 (-3.9)
	40대	0.34152	0.33097	-0.0106 (-3.1)	0.52012	0.48466	-0.0354 (-6.8)	0.72730	0.69417	-0.0331 (-4.6)
	50대	0.36463	0.34662	-0.0180 (-4.9)	0.40780	0.38747	-0.0203 (-4.9)	0.63148	0.60563	-0.0259 (-4.1)
	60대	0.47942	0.38882	-0.0906 (-18.9)	0.38843	0.32548	-0.0629 (-16.2)	0.62337	0.57806	-0.0453 (-7.3)
	70대 이상	0.60735	0.46585	-0.1415 (-23.3)	0.40676	0.32518	-0.0815 (-20.0)	0.61902	0.53922	-0.0798 (-12.9)

주 1. 분석을 위해 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소득/ $\sqrt{\text{가구원}}$)를 적용함.

2. ()안은 지니계수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2009;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9; 산림청, 임가패널 2009

마지막으로 임업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공적 이전 전후로 구분하여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공적 이전 전의 지니계수는 0.6526이었으나 공적 이전 후에는 0.6181로 공적 이전 후 소득불평등이 약 5.3% 감소하였다. 이를 가구주 연령에 따라 60대 미만과 60대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0대 미만 가구는 3.8%(0.66123 → 0.63607), 60대 이상 가구는 8.9%(0.62900 → 0.57303)의 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미만 가구에 비해 60대 이상 가구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5.1%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불평등 개선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30대 이하 가구는 3.9%(0.61694 → 0.59281), 40대 4.6%(0.72730 → 0.69417), 50대 4.1%(0.63148 → 0.60563), 60대 7.3%(0.62337 → 0.57806), 70세 이상은 12.9%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0.61902 → 0.53922). 이를 가구 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60대 이상에서는 일반 가구에 비해 임가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일반 가구와 농가, 임가의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고, 소득원천별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유형별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살펴본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모두 일반 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임가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가구주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 가구와 농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졌으나, 임가의 경우에는 60대 미만 가구가 60세 이상 가구보다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소득·타업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젊은 층이 임업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²

둘째, 소득원천별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빈곤 감소의 공적이전 효과는 임가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 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 가구, 농가, 임가 모두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적이

¹² 임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본 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자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밝힌다.

전 효과가 높아졌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적이전 효과는 임가, 농가, 일반 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빈곤 감소의 사적이전 효과는 일반 가구와 임가, 농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를 가구주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일수록 일반 가구는 공적이전 효과가 사적이전 효과보다 낮았으나 농가와 임가는 공적이전 효과가 사적이전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유형별 공적이전 전후의 소득불평등을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적이전 효과는 농가, 일반 가구, 임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가구주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반 가구의 공적이전 효과가 가장 높으며, 농가, 임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일반 가구보다 농가와 임가의 공적이전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그간 일반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이전 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가와 임가, 그리고 본 고에서 포함하지 않은 어가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적이전 효과 및 사적이전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 결과 일반 가구에 비해 농가 및 임가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 가구와 농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임가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나타냄) 일반 가구, 농가와 임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가와 임가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및 불평등 감소 효과가 일반 가구와 비교할 때 큰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들에게 더 커진다. 여기에는 이를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농어민 국고보조¹³ 강화 및 저소득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임의(계속)가입 확대 및 추납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1995년 7월에 농어촌지역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거나 완전노령연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농가와 임가의 경우 일반 가구

¹³ 2010년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79만 원 이하인 농어민 가입자는 매월 본인보험료의 1/2를 정률 지원받고(9,900~3만 5,550원), 79만 원 초과인 경우는 매월 79만 원 본인보험료의 1/2 (3만 5,550원)를 정액지원 받는다. 따라서 연간 최대 42만 6,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임가의 경우 농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미 60세 이상이 되어 수급연령이 지난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요구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을 아예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 요구되며, 아직 수급개시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과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뿐 아니라,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급여 수준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농어민¹⁴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일반예산으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보험료 국고보조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농림부에서 협업배우자에 대한 국고보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국고보조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국고보조 대상은 지원 대상이 일정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작면적이 없는 소작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에서 대도시 1억 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자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가 주택에 대해서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근로소득과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공제와 같이 농림어업으로 인한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¹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 농어업인에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계산되는데, 이러한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거주주택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가 주택에 대해서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규모는 2008년 기준 182만여 명(전체 인구의 3.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여유진·김미곤·김상균·구인회·오지현·송치현 2009)되며,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앞선 분석결과에서 임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는 점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어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절대빈곤을 산정 시 자산을 제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할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성호. 2008.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4호. pp. 65-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성호, 임병인. 2009. “노후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추정과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pp. 55-85. 한국사회보장학회.
- 강성호, 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2호. pp. 43-71.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pp. 113-149.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수완, 조유미. 2005.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국민연금연구원 Working Paper.
- 김우영, 김현정. 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pp. 39-78. 한국국제경제학회.
-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0권. pp. 171-19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학주. 2006.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4

- 호. pp. 141-161.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대식. 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윤병석. 2009. “영세, 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산림청. 2009. “임가경제통계.”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39권. pp. 157-179. 한국사회복지학회.
- 여유진. 2009.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pp. 45-68. 한국사회보장학회.
- 여유진 등. 2009.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등.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수 등. 2005.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금융연구』 제19권 별책.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홍경준. 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pp. 61-86. 한국사회복지학회.
- Beckerman, W. 1979. *Poverty and the Impact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mes in Four Developed Countries*. Geneva: International Office.
- Mitchell, Deborah. 1991.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London: Avebury.
- Nelson, Kenneth. 2004. “Mechanisms of Poverty Alleviation: A New Methods for Disaggregating Anti-Poverty Effects into Various Transfer Program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LIS Working Papers* No. 372.

원고 접수일: 2011년 2월 10일
원고 심사일: 2011년 2월 16일
심사 완료일: 2011년 4월 18일

「부록」 가구유형별 기본 통계치

<부표 1> 가구유형별 가구수, 인구수, 성별 현황(2009)

(단위: 천가구, 천명, %)

구분		전국(p)	농가	임가
가구 수(천가구)		16,917	1,195(7.1)	97(0.6)
인구(천 명)		48,747	3,117(6.4)	264(0.5)
평균 가구원수(명)		2.88	2.61	2.72
성별(천 명)	남	24,481 (50.9)	1,510 (48.4)	131 (49.6)
	녀	24,265 (50.4)	1,607 (51.6)	133 (50.4)

주: 1) 전국은 2009년 잠정치임

2) () 안은 비율

자료: 통계청, KOSIS 참고;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 인구

<부표 2> 가구유형별 연령별 인구 수, 고령화 현황(2009, 2005년)

(단위: 천명, %)

연령대		전국(p)	농가	임가
30세 미만		17,659 (36.2)	1.7 (0.1)	57.6 (21.8)
30대		8,185 (16.8)	78.0 (2.5)	17.4 (6.6)
40대		8,371 (17.2)	468.3 (15.0)	36.9 (14.0)
50대		6,351 (13.0)	806.4 (25.9)	52.2 (19.7)
60대		3,920 (8.0)	936.6 (30.0)	59.0 (22.3)
70세 이상		4,260 (8.7)	826.3 (26.5)	41.3 (15.6)
고령화율	60세 이상	16.8%	56.6%	37.9%
	65세 이상	12.5%	41.8%	27.1%

주: 1) 고령화율=65세 이상(60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100

2) 전국은 2009년 잠정치이며, 임가는 2005년 기준임

3) () 안은 비율

자료: 통계청, KOSIS 참고;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추계(전국)